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3호 위반 사업자에 대해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 통지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고제목 :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정권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2. 공고기간 : 2026. 9. 4.~2026. 9. 21. (17일간)

3. 대 상 자

성명	주 소	처분내용	반송사유	비고
(주)프OO코리아	인천광역시 서해구 열우물로 227	시정권고 통지서	폐문부재	

4. 내 용

가. 시정권고 수락서 제출기한 : 2026. 9. 21.까지

- 권고사항 이행 후 증빙서류(통신판매업 신고증, 수정된 홈페이지 캡처화면 등) 및 시정결과 수락서를 전자우편, 팩스, 우편 등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, 「전자상거래법」 제31조제3항에 따라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시, 「전자상거래법」 제45조제4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.

5. 문 의 처 :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경제정책과 (☎032-560-4436)

2026년 9월 4일

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

